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99
------	------

제출일자 : 2024. 4.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9. 공포 및 2023. 7. 10. 시행) 및 「지방자치법」 개정(2021. 1. 12. 공포 및 20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1) 자치위원 선정방식의 간소화 및 구청장, 동장,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노력 의무 부여(안 제11조제1항, 제3항)
- 2) 자치위원에게 신문구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단서 신설)
- 3) 연임한 위원의 경우 2년간 자치위원 선정 제한(안 제16조)
- 4)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회의 참석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21조)

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물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6)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자격에 주민자치 및 사회복지 전문가 추가(안 제26조)

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 1) 프로그램 개설시 주민의견을 수렴(안 제36조)
- 2)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주체 정비(안 제36조 및 제37조)
- 3)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보고시기 12월로 변경(안 제43조제1항)
- 4)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관내 주민으로 하고, 1인당 감면 프로그램 수를 1개로 규정(안 별표2)

다. 현재 여건을 반영한 조문 변경

- 1)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 2) 자치계획 내용 및 주민자치회의 기능 정비(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2)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4. 3. 12. ~ 2024. 4. 1.) 결과: 미반영
- 3) 비용추계서 :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 중 “동 행정사무”를 각각 “행정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 5.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계획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동”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을 “(자치위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추천 또는”을 “자치위원은 제1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빙자료 제출”을 “증빙자료의 제출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로,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선정과 위촉)”을 “(자치위원의 선정과 위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치위원 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가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를 “선정된 자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를 “자치위원 선정 명부를 접수한”으로, “위원을”을 “자치위원을”로 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는 공개 추천 방식으로 자치위원을 선정한 후 추천

을 통하여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청장은 자치위원”으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를 “예비후보자를 위촉하고, 예비후보자가 결원일 경우는 제1항의 방법으로 자치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을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으로, “공고”를 “주민에게 공고”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30일간 공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선출방법”을 “선출”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각각 “자치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을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를 “되어 있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를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를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로, “않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의무)”를 “(자치위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자치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을 “정치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구정·시정·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등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위원의 임기)”를“(자치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을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 차례 연임한 자치위원은 임기가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자치위원으로 선정 및 위촉될 수 있으며,

제17조의 제목“(위원의 위촉 해제)”를“(자치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을 각각 “자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각각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자치위원에게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위원의”를 “자치위

원의”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0조의 수강료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 중”을 “자치위원 중”으로, “위원이”를 “자치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각각 “자치위원”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회의)”를“(주민자치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을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등으로 구분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정례회의”를 “자치위원을 정원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자치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동장의”로, “개최한다”를 “자치회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기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치위원”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별 위원을 정원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자치회장과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장이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회의록)”을 “(주민자치회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간사는”을 “사무국장은”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분과위원장이 작성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연 1회 제10조제1항”으로, “사람들의 참여로 연 1회”를 “사람들이 참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치”를 “비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 및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용 물품 등의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협의·심의하기”를 “협의·자문하기”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협의회”를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궐위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회장·부회장 및”을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로,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동별 주민자치회장
2. 위촉직 위원
  - 가.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나. 주민자치, 지방자치, 교육(평생교육포함), 언론, 문화체육,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제28조제2항 중 “위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별 주민

자치회장이 아닌”을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를 “제26조제2항제2호가목의 자격으로 위촉된 사람이 구”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회의)”를 “(협의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회의록)”을 “(협의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등의 설치가”를 “시설의 설치가”로,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시설의 설치계획”으로 한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관리는 동장이 하며,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한다.

① 제36조에 따른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단, 주민자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용료등”을 각각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감면 비율”을 “감면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강료 사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사용료등의”를 “사용료 등의”로, “사용료등을”을 “사용료 등을”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2월”을 “12월”로, “제출한”을 “제출한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47조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자치위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2023년 12월 14일에 위촉된  
 자치위원과 그 결원 발생으로 인해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40조제4항 관련)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사용료	100%	○국가·공공·직능 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관내 주민에 한함

※ 1인당 감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수: 1개 (체력단련실 별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 5.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 -----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자치계획의 내용)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제5조(자치계획의 내용) -----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사무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생략)
제8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생략)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생략) ② (생략)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3. 4.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 3. (생략)
- 4.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④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

-----  
-----  
-----.

- 1. (현행과 같음)
- 2. -----  
-----  
----- 증빙자료의 제출이 -----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자치위원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자치위원 -----  
-----
- 5. 「공직선거법」 제19조-----  
-----

- ④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  
----- 자치위원 -----  
-----.

제11조(자치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를

의 방법으로 공개 추천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0분의 60 이내

-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0분의 40 이내. 다만, 총원의 100분의 40에 미달될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수자 중 정원 범위 내 총원이 가능하다.

-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

회는 제1항 단서 비율에 따라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천을 통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추천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

는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선정된 자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  
-----  
-----.

⑤ -----  
----- 자치위원 선정 명부를 접수한 -----  
----- 자치위원을 -----  
-----.

⑥ 구청장은 자치위원-----  
----- 예비후보자를 위촉하고, 예비후보자가 결원일 경우는 제1항의 방법으로 자치위원을 -----  
-----.

- <삭 제>  
  
<삭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추천 후 위촉

⑦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추천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추천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1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 4. (생략)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② ----- 되어 있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치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

1. ~ 4. (현행과 같음)

② 자치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 정치적 -----.

③ 자치위원-----.

제15조(위원의 대우) 자치위원--

위원과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추천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11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

4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장에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

-----  
-----  
-----  
-----.

1. (헌행과 같음)
2. 자치위원 -----  
-----
3. ----- 자치위원-----  
-----
4. ----- 특별법 제40조제5항-----  
-----
5. 특별법 제40조제5항-----  
-----
6. -----  
----- 자치위원-----  
-----  
-----

② 자치위원에게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  
-----  
자치위원의 -----  
-----  
-----

하여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 ① ~ ③ (생략)

④ 자치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제19조(감사) ① (생략)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그밖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



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정기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22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로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 ⑤ (생략)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치위원-----.

⑥·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자치회 회의록) ----- 사무국장은 -----  
---.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분과위원장이 작성한다.

제23조(주민총회) ① -----  
-- 연 1회 제10조제1항 -----  
--- 사람들이 참여하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비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삭제>

⑧ (생략)

<신설>

제24조(설치)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제3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官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동별 주민자치회장

③ (생략)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위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회장·부회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동별 주민자치 회장
2. 위촉직 위원
  - 가.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나. 주민자치, 지방자치, 교육(평생교육포함), 언론, 문화체육,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  
-----.  
---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  
----- 전임위원 임기-----  
-----.

제28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협의회 위원 -----  
-----

이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별 주민자치회장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생략)

제3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생략)

제31조(회의록) (생략)

제3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이 제3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

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수립하여 프로그램-----  
-----.

② 자치회관의 시설 관리는 동장이 하며,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  
-----  
-----  
-----.

④ -----  
----- 시설의 설치가 -----  
----- 시설의 설치계획-----  
-----.

제37조(운영) ① 제36조에 따른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단, 주민자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0조(사용료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41조(이용 등) ①·② (생략)

③ 주민은 제40조에 따른 사용

④ -----  
-----  
-----  
----- 사용료 등  
-----  
감면비율 -----  
--.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강료 사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주민자치회-----  
-----  
-----  
-----  
-----  
-----  
-----  
-----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1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료

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략)

제4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40조에 따른 사용료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제출한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보험) 구청장은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수강료의 감면 기준

**사용료·수강료의 감면기준**  
(제40조제4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비고
사용료	100%	○국가·공공·직능 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사람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40조제4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비고
사용료	100%	○국가·공공·직능 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사람	중복 불가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관내 주민에 한함  
※ 1인당 감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수: 1개 (체력단련실 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주민자치회 분과회의 참석수당 지급
-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신문 구독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추계기간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방법
  - 분과수당 : 1회 1만원 × 월 2회 × 430명(현원) × 70%(참석률) × 12월 = 72,240천원
  - 신문구독 : (13천원×80명 + 20천원×350명) × 12월 = 96,480천원

(단위 : 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1차년도
세입			-
			-
		소계(a)	-
세출	분과수당	기존	-
		증가액	72,240
	신문구독비	기존	-
		증가액	96,480
		소계(b)	168,720
□ 총 비용(a-b)			△168,720

(단위 : 천원)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국비			-
시비			-
구비	자체재원		168,720
	의존재원		-
	지방채 등		-
합계			168,72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백소현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76호, 2023. 10. 12.,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등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등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등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개정 2019.12.31.>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등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21.11.16.>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운영과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신설 2021.11.16.>

**제4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등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자치계획의 내용)**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등 행정사무 협의 계획<개정 2021.11.16.>
3. 등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등에 예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등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7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등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8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9>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등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등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신설 2019.12.31.>

**제9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1.16.>

1. 해당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등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등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신설 2021.11.16.>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신설 2021.11.16>
1. 지방의회 의원으로 제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급천구 공무원으로 제직 중인 사람
  3.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④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 추천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0분의 60 이내<개정 2019.12.31.>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 받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0분의 40 이내. 다만, 총원의 100분의 40에 미달될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수자 중 정원 범위 내 총원이 가능하다.<개정 2019.12.31.>
-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③ 제12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단서 비율에 따라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천을 통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12.31.>
-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⑤ 구청장은 위원추천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12.31.>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추천 후 위촉
- ⑦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추천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31.>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1.16>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 학교·기관·단체의 추천 위원 2명 이내
-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개정 2019.12.31.>

- ④ 추천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31.>
- ⑤ 추천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9.12.31.>
- [제목개정 2019.12.31.]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1명을 둔다.<개정 2019.7.19>

-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해당 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신설 2019.7.19>
-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2.31.>
-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결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12.31.>

**제15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추천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11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2.31.]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신설 2021.11.16>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19>

-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 ②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1.11.16>
  -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 ④ 자치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 ⑤ 구청장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감사를 2명 이상 둔다.<개정 2019.7.19>
-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주민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 ④ 그밖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1.16>

-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1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과활동에 한정하여 의견진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개정 2019.12.31.>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

- 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1.>
-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정기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16.>

**제22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로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개정 2019.12.31.>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주민총회 참석자의 참여로 결정하며, 투표방법과 의결방법은 주민자치회가 정한다.<개정 2021.11.16.>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삭제 <2021.11.16.>
  3. 자치계획의 결정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전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6.>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 ⑧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2.31.>

### 제4장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제24조(설치)**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제3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官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동별 주민자치회장

③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각 1명으로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회장·부회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별 주민자치회장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를 한 경우

**제3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자치회관

**제34조(설치)**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00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계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이 제3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등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입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에 따라 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되, 제40조에 따라 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지출 및 관리 등은 사무원이 하되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1.11.16.>

- 제4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4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교양강좌 또는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40조에 따른 사용료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제출한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제4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8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자치회관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 제4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제7장 보 칙**

- 제4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와 제19조의 감사 및 제43조의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7.19>
  -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9.7.19>

- 제46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분과위원회·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해당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와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각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9]

- 제47조(보합)** 구청장은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제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제1장 총강(總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